

# 2020년도 제2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20 기정예산	2020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1,187,460	1,087,860	△99,600	△8.4%
일반회계	1,647	1,647	-	-
특별회계	1,185,813	1,086,213	△99,600	△8.4%
도시개발	1,185,813	1,086,213	△99,600	△8.4%

### 2. 세출예산 ※ 전액시비 감액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20 기정예산	2020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1,514,022	1,381,171	△132,851	△8.8%
일반회계	1,137,953	1,016,519	△121,434	△10.7%
특별회계	376,069	364,652	△11,417	△3.0%
주택사업	172,363	172,363	-	-
도시개발	188,954	183,797	△5,157	△2.7%
균형발전	14,752	8,492	△6,260	△42.4%

#### ※부서별 사업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2020 기정예산	2020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1,514,022	1,381,171	△132,851	△8.8%
재 생 정 책 과	55,957	55,870	△87	△0.2%
공 공 재 생 과	50,375	44,115	△6,260	△12.4%
도 시 활 성 화 과	1,133,983	1,019,276	△114,707	△10.1%
역 사 도 심 재 생 과	29,209	29,209	-	-
주 거 재 생 과	98,216	98,216	-	-
주 거 환 경 개 선 과	74,876	74,876	-	-
한 옥 건 축 자 산 과	23,552	16,905	△6,647	△28.2%
광 화 문 광 장 추 진 단	47,854	42,704	△5,150	△10.8%

## Ⅱ.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 사업명 (부서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총 계			1,145,720	1,012,869	△132,851
일반 회계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재생정책과)	국외업무여비	75	38	△37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시활성화과)	기타회계전출금	1,109,062	994,462	△114,600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한옥건축자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375	3,728	△6,647
	광화문 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광화문광장추진단)	사무관리비	1,210	1,060	△150
도시 개발 특별 회계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 (재생정책과)	행사운영비	50	0	△50
	교부금 (도시개발) (도시활성화과)	징수교부금	2,233	2,126	△107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 (광화문광장 추진단)	시설비	11,475	6,475	△5,000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시가지 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공공재생과)	시설비	7,980	4,980	△3,000
	삼양동 구릉지일대 이동편의 개선 (공공재생과)	사무관리비	5	0	△5
		시설비	3,000	0	△3,000
		감리비	240	0	△240
		시설부대비	15	0	△15

### Ⅲ. 검토의견

#### 1. 총괄

- 2020년도 제2회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8.4%(△99,600백만원), 세출예산은 8.8%(△132,851백만원) 감추경하였음.
-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10.7%(△121,434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각 2.7%(△5,157백만원), 42.4%(△6,260백만원) 감추경하였음.

〈'20년 도시재생실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기정예산	'20년 추경예산안	증감(증감률%)
총계	세입	1,187,460	1,087,860	△99,600(△8.4%)
	세출	1,514,022	1,381,171	△132,851(△8.8%)
일반회계	세입	1,647	1,647	-
	세출	1,137,953	1,016,519	△121,434(△10.7%)
주택사업	세입	-	-	-
특별회계	세출	172,363	172,363	-
도시개발	세입	1,185,813	1,086,213	△99,600(△8.4%)
특별회계	세출	188,954	183,797	△5,157(△2.7%)
균형발전	세입	-	-	-
특별회계	세출	14,752	8,492	△6,260(△42.4%)

#### 2. 세입예산안 총괄

- 2020년 제2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은 1조 878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 감액된 996억원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감액분 1,146억원과 '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의 일부(15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예산규모 조정에 따른 편성임.
- '20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추경은 '19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sup>1)</sup> 489억 3천6백만원 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결산 전

1)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50억원을 증추경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에 해당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세입예산	1,187,460	1,087,860	△99,600	△8.4%
도시개발특별회계	1,185,813	1,086,213	△99,600	△8.7%
순세계잉여금	31,231	46,231	15,000	48.0%
기타회계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1,109,062	994,462	△114,600	△10.3%

- 재산세 도시지역분(70%)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제9호2)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3)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0.3%(△1,146억원)를 감액하려는 것임.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저조한 집행률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4)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출

- 초과세입액(△348,621백만원) + 집행잔액(397,557백만원) = 48,936백만원

2)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법정전입금으로 재산세과세특례 분(구 도시계획세)의 70% 수입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 재촉 계정 각10% , 주차장특별회계10%)

4)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감추경분에 대해서는 추 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률(%)〉

(자료: 도시활성화과)

구 분	2020. 4	2019	2018	2017	2016
서울시	18.4	69.9	72.9	75.0	73.5
도시재생실	12.9	50.7	43.7	41.4	45.4

### 3. 세출예산안

#### 1) 총괄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3,811억 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140억 2천2백만원 대비 1,328억 5천1백만원(8.8%) 감액 편성됨<sup>5)</sup>.
- 세출예산 감액분에서 재무활동 1,146억원(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82억 5천1백만원(8개 사업)으로 도시재생실 사업예산 4,041억원의 4.5%에 해당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2020 기정예산	2020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1,514,022	1,381,171	△132,851	△8.8%
일반회계	1,137,953	1,016,519	△121,434	△10.7%
특별회계	376,069	364,652	△11,417	△3.0%
주택사업	172,363	172,363	-	-
도시개발	188,954	183,797	△5,157	△2.7%
균형발전	14,752	8,492	△6,260	△42.4%

#### 업비의 지원

-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 8.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 9.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 11.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5) 총 9개 사업 132,851백만원 감액 (전액 시비)
- 일반회계 : 4개 사업 121,434백만원 감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 3개 사업 5,157백만원 감액
  - 균형발전특별회계 : 2개 사업 6,260백만원 감액

- 금번 세출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업성격상 대면활동이 전제되는 행사성 사업과 국외업무여비 예산(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3건), 공정 또는 예산집행 일정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시가지(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3건), 물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1건) 등에서 감액하였음.

〈세부사업별 세출 추경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명 (부서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추경(감액) 주요사유
총계			1,145,720	1,012,869	△132,851	
일반회계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재생정책과)	국외업무여비	75	38	△37	- 우당기념관 조성관련 MOU 체결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및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선진 건축문화 탐방 관련 여비 외 감액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시활성화과)	기타회계 전출금	1,109,062	994,462	△114,600	-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한옥건축자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375	3,728	△6,647	- 한옥 등 건축자산 매입 연간 목표 건수 (4건 → 1건) 조정
	광화문 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광화문광장추진단)	사무관리비	1,210	1,060	△15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토론회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일부 일정 연기에 따른 사업비 조정
도시개발특별회계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 (재생정책과)	행사운영비	50	0	△50	- 3.1절 행사 취소 및 8.15 기념행사 개최 불투명으로 행사운영비 감액
	교부금 (도시개발) (도시활성화과)	징수교부금	2,234	2,126	△107	- '19년 자치구 징수교부금 산정 및 교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11,475	6,475	△5,000	- 22개 사업구간 중 지역 주민 요구가 많은 광화문 서측 (사직동) 구간 7개소

회계	세부사업명 (부서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추경(감액) 주요사유
	(광화문광장 추진단)					우선 추진 후 잔여구간 (15개소) '21년 추진
균형 특별회계	시가지 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공공재생과)	시설비	7,980	4,980	△3,000	-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 공사 추진에 필요한 총 52억 확보 (8개소 설계비 16억, 조기완료 가능한 4개소 선금금 36억) - 확보된 금액 외 나머지 공사비는 '21년 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
	삼양동 구릉지일대 이동편의 개선 (공공재생과)	사무관리비	5	0	△5	- 미양초교 학부모 사업반대(학습권 침해) 및 사업추진 시기 변경으로 전액 감액
		시설비	3,000	0	△3,000	
		감리비	240	0	△240	
		시설부대비	15	0	△15	

## 2)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 □ 행사성 사업 등 예산 감액 조정

- '태화관길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18~20년, 총사업비 2,600백만원)은 금년 예산 2억원 중 3.1독립선언 기념행사 취소와 8.15 기념행사 개최 불투명으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19.12~21.1) 사업은 금년 예산 14억원 중 사무관리비(1,210백만원) 1억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 행사성 사업의 취소 또는 일부 일정 연기 등에 따른 것임.

####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10,000	1,060,000	△150,000	
사 무 관 리 비	1,210,000	1,060,000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 등 △50,000</li> <li>◦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홍보 △50,000</li> <li>◦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50,000</li> </ul>

- ‘도시재생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sup>6)</sup>(‘20.1.~’20.12, 1,933백만원)를 위한 국외업무여비(7천5백만원)에서 3천7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코로나 19에 따라 상반기 공무국외출장이 미추진됨에 따라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우당기념관 조성사업과 총괄건축가와 함께하는 선진 건축문화 탐방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감액한 것임.

□ 공정 또는 예산집행 일정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 감액

-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18.8~’21.12, 총사업비 24,220백만원)을 위한 금년도 예산(8,232백만원) 중 시설비(총 7,980백만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금년 4월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개소<sup>7)</sup>에 대한 사업 공정과 예산집행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8개소에 대한 설계비(16억원)와 4개소(국공유지)에 대한 공사비 선급금(36억원, 40%) 등 총 5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임.

(단위 : 억원)

자치구	사업명	총집행 (억)	2020년			2021년
			소계	설계비	공사비	
	총 계	240	52	16	36	188
중구	동호터널옆 옹벽	25	11	2	9	14
	대현산 배수지공원 구릉지	35	2	2		33
성동구	옥수동 옥수교회 앞 보행로	15	7	2	5	8
	행당2동 대현산공원	35	14	2	12	21
서대문구	북아현동 251-99 외 구릉지	28	12	2	10	16
금천구	금하로30 구릉지	30	2	2		28
	장미공원구릉지	37	2	2		35
용산구	서울역일대도시재생 지역(서계동)	35	2	2		33

- ‘삼양동 구릉지 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19.12~’21.1, 총사업비 3,260백만원)은 미양초등학교 학부모 반대 민원 및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 중지(‘20.1.29) 및 용역 발주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하고, 사업시기를 2024년 미양 초등학교 재건축 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 예산 32억 6천만원 전액을 감추경하였음.

6) 사업별설명서 1551, 예산서 308쪽

7)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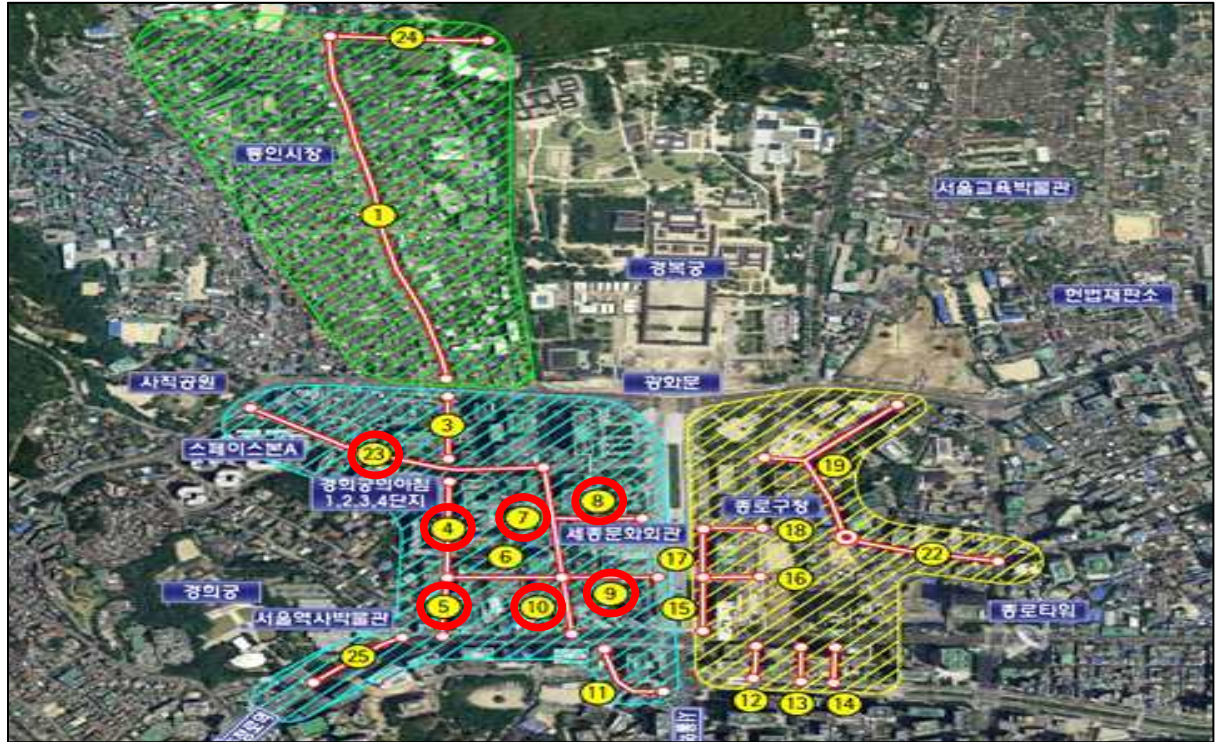


-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시설비) 115억원 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체 사업구간 22개소<sup>8)</sup> 중 지역주민 요구가 많은 7개 구간<sup>9)</sup>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 15개소에 대한 사업은 '21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50억원(보상비 4,800백만원, 공사비 200백만원)을 감추경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자하문로 외 21개 구간 (L=7,530m, A=30,170㎡)
- 사업기간 : '19. 10. ~ '21. 5.
- 사업예산 : 250억원 (보상비 48억원, 공사비 192억원, 용역비 10억원)

구 분	계	'19(추경)	'20	'21
사업비(억원)	250	10	115(→65)	125(→175)



- 8) 당초 25개소에서 3개소 제외(②번 효자로, ⑩번 을곡로4길, ⑪번 삼청로 포장상태 양호로 제외)
- 9) 우선 추진 예정인 7개 구간

연번	노선명	사업구간	폭(m)	연장(m)	면적(㎡)	개략공사비(백만원)
1	새문안로3길	④ 내수동 72~ 당주동 100	3~5	500	2,000	1,100
2		⑤ 신문로1가 238~신문로1가 57	2~3	280	700	500
3	새문안로5길	⑦ 적선동 166~당주동 5	3~4	260	900	500
4		⑧ 도림동 95-1	2	170	1,140	700
5	세종대로23길	⑨ 당주동 16~세종로157	2~5	300	2,200	1,200
6	새문안로5길	⑩ 당주동 160~신문로1가 24	2~4	280	800	500
7	사직로8길	⑫ 사직동 9-2~세종로 79-10	2~5	1,000	4,000	2,500

□ 물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예산 감액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예산 103억 7천5백만원은 당초 4채의 한옥 매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자원 확보를 위해 매입 목표 건수를 축소 조정(4개소→1개소) 하여 66억 4천7백만원을 감추경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375,000	3,728,000	△6,647,0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375,000	3,728,000	△6,647,000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금액 6,647백만원 감액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은 매입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변수가 많은 사업으로서, 소유자에게 매도의사가 있을 시 적기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예산확보가 전제<sup>10)</sup>되어야 하나, 코로나 19 대책 관련 예산 확보의 중요성 및 시급성으로 인하여 매입 절차가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있는 건을 제외한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으로 이해됨.

<’20년도 매입 및 활용 계획(당초안)>

구분	대상지	활용계획(안)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1	안국동 175-35 외 1 (2)	서울공예박물관과 연계, 전통문화시설	2,237	
2	성북동 62-6 (2)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내 최초 공공한옥	1,060	
3	가회동 30-9 (1)	북촌안내소 및 주민소통공간 조성	4,400	
4	와룡동 18 (1)	돈화문 국악당 인근 한옥 특화공간 조성	2,678	
계			10,375	

□ 기타 사업

- ‘교부금(도시개발)’ 감액분은 자치구에 위임한 체비지에 대한 ‘19년도 징수 교부금 산정·교부<sup>11)</sup>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불용 예정, 107백만원)을 긴급재

10) '20.1~4월에 걸쳐 26건의 매입신청이 접수. '19년 매입 실적은 총 4건(12,430백만원)임.

1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체비지관리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체비지의 관리대장 보관 및 기록 유지, 무단점유 예방, 지장물 철거 등 개별 체비지의 관리
2.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학교용지 제외)에 해당하는 체비지의 매각

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233,683	2,126,419	△ 107,264	
징 수 교 부 금	2,233,683	2,126,419	△ 107,264	2019회계연도 징수교부금 산정 및 교부 후 집행잔액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 락 처	02-2180-8205
이 메 일	kslimga@seoul.go.kr

3. 체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다만, 제1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퍼센트, 변상금 징수액의 50퍼센트, 매각대금 납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치구에 귀속된다.